

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- 재정법 제77조,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여 구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하단동 SK VIEW아파트 사업부지내 포함되는 보존부적합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 주체인 SK건설(주)에 매각하고자 함.
- 매각대상 재산현황

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	m ² 당 공시지가 (천원)	대장가격 (천원)	소유자
		지적	신청			
합계	5필지	1,210	1,210		781,660	
하단동 845-47	대	663	663	646	428,298	사하구
“ 845-48	“	2	2	646	1,292	“
“ 845-49	“	435	435	646	281,010	“
“ 845-50	“	25	25	646	16,150	“
“ 845-51	“	85	85	646	54,910	“

3. 관련계법령 및 조례

-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(국·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)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
4. 검토의견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제105회 임시회시 심의한 내용으로서 해당부지는 시공사(SK)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임으로 사용시점부터 용도폐지(도로→대지)하는 날까지의 도로점용 변상금과 용도폐지후의 대지 무단사용 변상금은 일괄 납부 조치후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2002. 10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립